

제3장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 조사방법 개선

양경진

제3장

제1절 서론

우리나라는 결혼시장의 성비 불균형과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유입 증가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입 증가는 곧바로 다문화가정의 정착 문제, 불법체류자 처리 문제 등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표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외국인에 관한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고려가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정책적 준비의 시작은 기초 통계자료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를 아우르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자리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가구·주택에 대해 규모·구조·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는 통계조사이며, 조사결과는 각종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입안과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이용되고 있다. 조사대상은 일정 기준시점에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내·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주택 및 주택이외 거처)가 된다. 인구센서스라고 하면 보통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이해하기 쉬우나 외교관, 외국군인·군속 및 그 가족과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에 등에서 공무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 국내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도 조사의 대상이 된다. 실질적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3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체류 예정인 사람으로서 단순한 여행객을 제외하고자 하는 국제적 권고사항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5년 현재, 외국인 조

사는 별도의 전용 조사표를 통해 이름, 성별, 국적 등 기본사항과 함께 '주거현황', '하고 있는 일의 종류' 등 비교적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면접 조사하고 있는 통계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유일하며, 따라서 통계로서의 그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중요성과 정책적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불법체류 등의 문제로 인한 조사 비협조로 내국인 조사와는 달리 과도하게 누락률이 높은 실정이다. 외국인 조사의 어려움은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정책적 기반으로서의 정확한 통계 제공이라는 본질적 역할수행에 있어 많은 고민과 개선노력이 따라야 할 부분이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는 조사된 자료의 정도확보 문제와는 별도로 외국인 전체 규모에 대한 정보가 더욱 중요할 수 있으며, 일반 통계 이용자에게 있어서도 출입국자료 등 타 외국인 관련 자료와 통계조사결과간의 차이가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외국인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 집계 시, 현재와 같이 내·외국인을 구분하고 내국인 위주로 집계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정보를 파악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개선 노력의 시작은 결국 외국인 전체 규모의 합리적 파악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전체 거주자에 대한 통계정보의 확대 제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에 있다. 정책적 중요성에 기초한 기존 외국인통계 작성의 문제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 및 배경

본 연구는 근래 회자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을 비롯한 외국인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각종 사회정책의 통계적 기초자료로서의 인구주택총조사의 효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작성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까지 총 17회를 실시해오면서 유지되고 있는 외국인 조사방법에 대한 재검토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외국인 조사방법

의 개선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향후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 조사방법 개선의 기본방향을 누락 외국인 문제의 해결에 두었으며, 외국인 전체규모의 정도 높은 파악을 위해 기존의 조사방법의 한계를 제시하고 조사항목, 조사표 설계 등 조사방식의 전면적인 체계의 개선까지도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현황의 파악을 위해 UN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해외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국내의 외국인관련 작성 통계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개선방안 제시의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현재까지 행정자료를 기본으로 하는 등록센서스 개발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외국인 부문에 대해 행정자료 기반의 통계 작성을 모색함으로써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내국인 중심의 등록기반 센서스 시스템과의 접목을 고려하였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외국인관련 조사 항목 및 조사표 체계의 개선과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있어 외국인조사의 응답률 제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2절 외국인관련 통계작성 현황

본 절에서는 기존의 외국인과 관련된 통계작성의 방법과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기존 자료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조사 부문에 대한 개선의 방향설정을 모색하고자 한다. 외국인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방법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 하나는 외국인관련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통계이고, 다른 하나는 인구주택총조사로 대표되는 조사에 의한 통계이다.

행정자료를 이용한 외국인관련 통계는 크게 법무부의 출입국자료 통계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거주현황 통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는 출입국자료를 기본으로 구축하여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되는 통계이다. 결국, 이 두 기관의 자료원은 동일한 것으로써 나올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나, 각자 행정적 목적의 상이성으로 인해 작성의 방향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작성목적상 출입국자료의 경우는 출국과 입국 기록에 의한 체류외국인의 전체 규모 파악과 체류의 불법성 등과 관련된 행정적 처분과 지도의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자료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의 수요 파악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조사 통계와 행정자료에 의한 통계

가. 조사통계

외국인과 관련하여 통계조사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통계로는 인구주택총조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와 주택에 관한 전수조사로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함으로써 체류외국인 전체규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교육정도, 체류목적 등 세부적인 정보까지도 제공이 가능한 통계이다.

최근 들어 행정안전부에서 체류외국인의 세부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심층적인 외국인실태 통계조사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전국의 1,200개 표본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대표도의 한계가 따르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조사결과는 2008년부터 조사된 이후 현재까지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적 목적의 내부자료로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외국인관련 통계로서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며 자료를 공표하고 있는 통계는 현재로서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다.

〈표 3-1〉 행정안전부 ‘이주민생활 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 부문	세부 조사항목	
I. 이주민 한국생활	입국 시기	월 소득
	1. 가족 수	4. 주거형태
	2. 직업	5. 한국생활 만족도
	3. 취업희망여부	6. 불만족 원인
	3-1. 희망취업 분야	6-1
	3-2. 희망 취업 교육분야	
II. 한국생활 적응 정도	3-3. 한국어 구사능력	희망 적응교육 프로그램
	1. 적응교육 수강 여부	3. 생활정보 획득 수단
	2. 적응교육 장소	4. 획득을 희망하는 정보
	2-1. 희망 적응교육 장소	5.
	2-2. 적응교육 미수강 이유	
III. 이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정도	2. 적응을 돕는 이웃 친구	지역행정에 참여한 경험
	1. 수 ()	3. 참여한 업무
	지역사회 행사 참여 경험	4. 적응을 위한 상담 대상
IV. 이주민 인적사항	2. 연령	출신국가
	1. 성별	4. 입국 자격
	2. 거주 시도	5. 한국국적 취득 여부
	3.	6.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산출되는 외국인 통계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이름, 성별, 나이 등 기본적인 항목뿐만 아니라 거처의 종류, 주거 형태 등 추가적인 특성항목까지도 조사함으로써 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물론 국내 체류 외국인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개별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행정기록을 통한 공식화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현장에서 수집 가능하다는 통계조사의 특성 때문에 여타 행정자료에 비해 탁월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2>에서와 같이 인구주택총조사는 ‘사용 방수’, ‘화장실 형태’, ‘부엌시설’ 등 외국인에 대한 거주관련 항목까지도 현실에 기초하여 조사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행정자료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차별화된 항목으로서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체류외국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의 기초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

〈표 3-2〉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년도별 외국인 조사항목 변천

조사항목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인구									
이름	○	○	○	○	○	○	○	○	○
성별	○	○	○	○	○	○	○	○	○
연령	○	○	○	○	○	○	○	○	○
교육정도								○	○
국적	○	○	○	○	○	○	○	○	○
출생지				○	○	○	○	○	
체류목적	○	○	○	○	○	○	○	○	○
체류기간	○	○	○	○	○	○	○	○	○
직업				○	○	○	○	○	○
가구·주택									
거처의종류		○	○	○	○	○	○	○	○
사용방수		○	○				○	○	○
주가구여부		○	○			○		○	○
건축시기		○	○				○		
점유형태		○	○	○	○	○	○	○	○
총방수		○	○			○	○		
총면적		○	○				○		
건축재료				○					
난방시설					○	○			
부엌시설							○	○	○
화장실형태							○	○	○
독립출입구							○		

주 ○ 표는 해당 센서스에서 조사된 항목을 표시함

이와 같이 살펴본 조사통계의 특성은 현장에서의 생생한 면접에 기초한다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대규모 DB로 구축돼 이용되고 있는 행정자료에 비해 약점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사비용의 확보 문제와 조사비협조에 따른 문제로 집약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조사비용의 문제의 경우 어느 통계조사이든 대부분 비용 확보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회적 공공재라는 통계의 본질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상의 제약은 곧 필수적인 최소한의 투자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곧바로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의 제약으로 귀결된다. 비용제약의 문제는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자료 제공의 시의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에도 대규모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전수조사로서 조사주기가 5년이므로 자료제공 측면에서 제약이 따른다는 약점을 갖게 된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점별 자료 제공이 필요한데,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전수조사라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시점의 자료제공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행정자료를 통한 통계의 작성은 이미 행정적 목적만으로도 자료 구축에 필요한 재원이 투입되어 있으며, 이렇게 구축·운영되고 있는 행정자료의 가공만을 통해 다양한 통계의 산출이 가능하다. 통계생산의 시의성 측면에서 보다 우수한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조사통계의 또 다른 약점으로는 가구방문을 통해 작성되는 통계조사의 본질 상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꾸로 기본정보의 파악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외국인조사에 있어서는 불법체류자의 조사기피 현상으로 인해 조사의 완전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당시 조사된 외국인 총규모(237천 명)가 동일 연도의 법무부 출입국기록에 의한 장기체류 외국인 추정치(564천 명¹⁾)의 42% 수준이었다. 이렇게 전체 규모와 같은 기본정보에서조차 통계자료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 통계가 정책 기초자료로서의 이용은 물론, 단편적이고 직관적인 사용자라 할 수 있는 일반 이용자에게 있어서도 이해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다. 외국인조사방법 개선을 거론함에 있어 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비롯한 일반 통계수요자 중심의 편의성 제고 문제는 통계작성기관의 신뢰성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 행정자료에 의한 통계

행정자료를 이용한 외국인 통계는 대표적으로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

1) 체류외국인 총규모는 747.5천 명이지만 3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출·결과와 비교를 위해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등록자+비등록불법체류자)를 인용

와 이를 기본으로 구축되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시스템을 통한 행정안전부의 통계가 있다. 그밖에도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관련 자료가 있지만, 이는 약 15만 명에 달하는 고용허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두 자료와는 외국인을 포괄하는 정도와 성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부의 자료는 단지 부가적인 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체류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와 행안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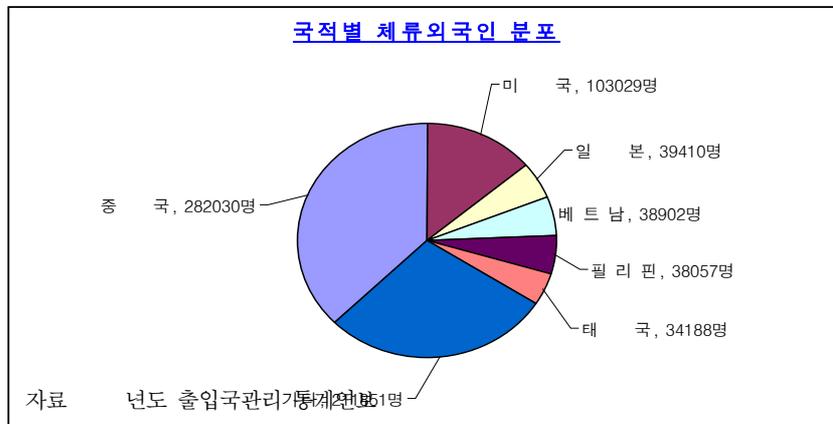
외국인관련 행정자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출입국통계의 경우는 체류자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의 출국 및 입국에 관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행정적 통계이다. 본 통계는 체류자를 규정함에 있어 장·단기를 불문하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별로 재구성하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를 체류 허가된 기간의 도과상태를 통해 구분할 수 있다는 점과 '국적취득 여부'와 같은 유의미한 부가정보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입국 시 기록되는 '여권번호'와 같은 정보는 외국인관련 모든 행정적 기록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으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향후 등록센서스 체제를 염두에 둘 때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3>과 [그림 3-1]은 출입국 행정자료의 특성을 대표하는 참고자료로서 행정자료의 목적상 합법과 불법여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표 3-3> 출입국 행정자료에 의한 체류외국인 규모(단기체류 포함)

계			
중 국	747,467	543,213	180,792
한 국 계	282,030	188,363	79,377
미 국 (일 본)	-167,589	-122,026	-36,699
베 트 남	103,029	97,088	2,155
필 리 핀	39,410	38,016	665
태 국	38,902	28,018	10,838
	38,057	24,538	13,249
	34,188	22,881	11,146

인도네시아	25,599	20,039	5,521
태 반	25,121	24,340	542
몽 골	22,475	12,004	10,354
방글라데시	15,116	1,352	13,605
우즈베키스탄	13,834	7,438	6,321
러 시 아	11,356	6,838	3,128
파키스탄	11,105	6,028	4,991
스리랑카	9,998	7,357	2,624
인 도	6,196	3,247	2,893
호 주	5,537	5,385	76
미 얀 마	5,515	3,281	2,231
카자흐스탄	3,374	1,605	1,761
이 란	3,062	1,889	1,141
나이지리아	1,665	376	1,278
기 타	1,644	663	966
자료	년도 출입국관리 통계연보	42,467	5,930

: 2005



: 2005

[그림 3-1] 출입국 행정자료에 의한 체류외국인 국적별 분포(단기체류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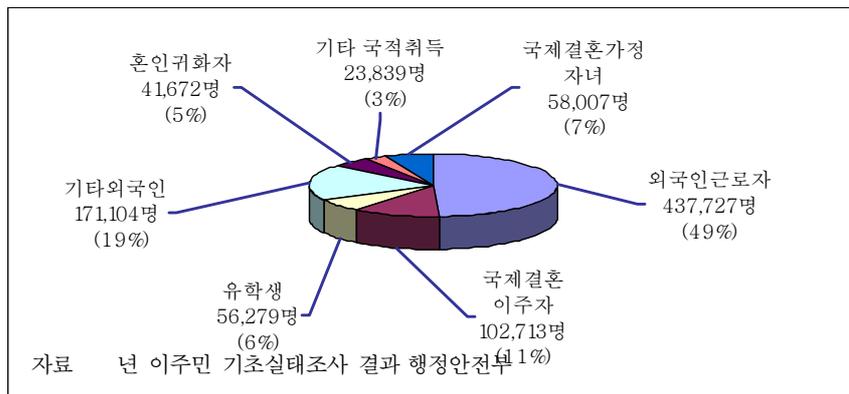
행정안전부의 '이주민 기초실태조사'의 경우는 명칭상 조사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지만 지자체의 외국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보고형식으로 취합된 결과로서, 조사통계에서 다른 바 있는 '이주민 생활실태조사'와 달리 행정자료에 의한 통계로 분류할 수 있다. 본 통계작성의 목적이 지자체별로 거주외국인에 대한 성별·국적 등 기본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사회 정착지원 시책에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것에 있으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이주민 가구의 자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사되는 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 행정안전부 '이주민 기초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 부문	세부 조사항목	
I 주민등록인구		
II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외국인 근로자 1 유학생 3 혼인 귀화자	국제결혼 이주자 2 기타 외국인 4
III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1 기타 사유로 국적 취득자 2	
IV 이주민 가정자녀		

[그림 3-2]는 행정안전부가 2008년 5월에 조사한 '이주민 기초실태조사' 결과로 외국인 주민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와의 비교를 위해서는 포괄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므로 '국제결혼가정 자녀' 58천 명(7%)과 '혼인귀화자' 42천 명(5%)을 제외하여야 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개념에 따르면 귀화자는 이미 외국인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인구이며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도 대부분 우리나라 호적에 등록하고 내국인의 지위를 얻게 되므로 내국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림 3-2] 이주민의 특성별 분포 (2008년 기준)

기본적으로 외국인관련 행정통계의 기초는 외국인 등록시스템으로 등록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체류기준은 90일 이상이다. 단기체류자격자가 불법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입국 시 신고한 기본 인적사항 이외의 부가적인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등록시스템 정보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범위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장기체류로 등록된 외국인과 비등록자 중 입국 후 90일이 경과한 불법체류자를 합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산출된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의 규모는 밀입국 등 극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국자와 출국자간의 개별 매칭을 통해 행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계적 신뢰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자료의 신뢰성은 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통계와 비교할 때, 체류외국인 총규모 파악에 있어서 월등한 비교우위를 보이는 부분으로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조사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해야만 하는 당위성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다. 조사통계와 행정자료 통계의 비교

통계작성에 있어 각종 개념의 정립과 기준의 설정은 통계작성 목적과 부합하여 결정된다. 통계명칭 상 비슷하게 보이는 유사통계의 경우에도 각자 조사에서 채용하고 있는 개념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해당 통계의 작성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행정자료에 의한 통계와 인구주택총조사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각 조사별로 살펴보면,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행안부의 '이주민 기초실태조사'에서는 90일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의 출입국자료는 기본적으로 일정 시점에 파악된 모든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 기초실태조사'는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라는 목적에 맞춰 혼인을 비롯한 귀화자와 국제결혼 가구의 자녀를 조사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조사 기준시점 당시에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외국인 여부를 판

단하게 된다. 즉, 혼인을 통해 귀화를 한 외국인의 경우 현재 국적을 획득한 사람이라면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주민 기초실태조사'는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로서 외국인의 범위를 현재의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혼인을 통해 귀화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이주민'이라는 개념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구의 자녀들도 이주민의 범주에 넣고 외국인 주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표 3-5>는 인구주택총조사와 행정자료에 의한 통계를 비교·정리한 결과이다.

<표 3-5> 외국인관련 통계 비교

구분	인구주택총조사	출입국 외국인 통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담당	통계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행정안전부
조사대상	전국 거주 모든 외국인	입출국 시 신고된 외국인()	자치체에 등록된 모든 외국인 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의 범위	개월 이상 체류 또는 체류예정자로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혼인귀화자 국제결혼자녀 제외	입국신고 이후 출국 신고 전까지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①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②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③국제결혼자녀
작성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	출입국 신고 및 등록	시군구별 보고 집계
자료출처	외국인가구 조사표	외국인 등록시스템	외국인 등록시스템
조사주기	년	출입국 신고서식 (출입국 시)	시군구별 보고서식 (년)
조사항목	이름	이름	1
	성별	성별	
	연령	연령	
	교육정도		
	국적	국적	
	체류목적		
	체류기간	체류기간	
	직업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주거구여부	
점유형태	
부엌시설	
화장실형태	
주소	주소, 출생지, 여권번호, 귀화 여부

주: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최초 기록된 내용 이외의 추가정보는 알 수 없음

제3장

2. 외국의 사례 및 국제기구 권고사항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시민권, 이전 거주지, 거주기간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권고하고 있어 필수적 항목 이외의 경우에는 각자 나라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권고되거나 추천하는 항목들 중에는 '국적', '전거주지', '거주기간' 등과 같이 외국인을 조사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들도 있으나, '인종/민족', '시민권', '사용언어' 등과 같이 국가의 특성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지는 항목들도 있다.

〈표 3-6〉 외국인항목관련 UN 권고 및 ECE/Eurostat 회원국 사례(2000라운드)

구분	권고	회원국 현황
기본항목	시민권, 전거주지, 거주기간	ECE/Eurostat
추천항목	사용언어, 국적, 출생국, 입국 연도, 인종, 민족	거주기간, 전거주지, 이민국간(13), (19), 출생국, 국적 (9) 인종, 사
기 타	/	용언어 / (30), (22), (24)

주: 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수
 자료: 한국인구학회,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연구 (2003.10.)

외국인전용 조사표의 사용여부에 관한 주요국의 사례 검토의 경우,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용 조사표를 통해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나라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 국가의 센서스조사표는 대부분 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표에 몇 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외국인을 조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표 3-7〉 주요국 센서스의 외국인관련 항목 비교

구분	미 국 (센서스 2000)	호 주 (센서스 2001)	일 본 (센서스 2000)	한 국 (센서스 2005)
별도조사표 사용 여부	일반조사표	일반조사표	일반조사표	전용조사표
외국인관련 조사항목	인종 국적 시민권(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여부 출생국 거주기간 모의 출생국 사용언어	국적	국적 체류 예정 기간 (체류목적)

이러한 주요국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가 외국인 전용 조사표를 채택하게 된 주된 배경에는 이들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체류외국인의 규모가 작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내국인용 일반조사표에 소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항목을 추가할 경우, 조사표 설계 및 공간 활용 측면에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오랫동안 이민을 받아들여 온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이민 정책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국가로서 체류외국인의 특성상 주로 장기 거주목적이 아닌 단기적 성격의 체류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단기적 체류자가 많다는 것은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따라서 한국어로 제작된 단일조사표를 운용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조사항목 측면에서도 '체류목적'과 같은 외국인 고유의 항목은 일반조사표에 포함시켜 조사하기에는 조사표 공간 활용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빼고 조사할 경우에는 표본에서만 조사하고 있는 '경제활동' 및 '직업'항목 만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 확보가 곤란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우리나라도 점진적인 체류외국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관련 통계 제공의 확대 필요성도 커지게 되므로 내·외국인간 조사되는 항목의 수준을 맞추어 내국인수준의 외국인관련 통계 제공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생기고 있다.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센서스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인구센서스에서 외국인 조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현행 조사체계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력 신장과 국제화 진전에 따라 체류 외국인 규모가 날로 커져 가는 상황이 도래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현상은 계속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증가현상은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의 자투리 분야로 여겨오던 외국인부문에 대한 비중을 점차 높여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후 외국인 조사부문의 전반적인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조사방법은 과거 체류외국인 규모가 작았을 때에 적합했던 체계로서 최근의 2005년 조사에서도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내국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미한 외국인을 별도의 부문으로 구분하여 최소한의 항목만을 조사하는 형태로 유지해온 것이다. 새로운 환경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사방식의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조사체계 개선논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조사된 외국인 규모와 행정자료간의 괴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서는 행정자료상 체류외국인 규모의 42%에 그치는 수준에서 외국인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 비율은 행정자료에 의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이 전체 체류외국인의 20%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볼 때, 단순히 불법체류자의 조사기피 현상으로만 돌리기 힘든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를 기피할만한 이유가 없는 합법적 체류외국인에 있어서도 많은 조사누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조사기피 현상과는 별도로 조사과정에서 외국인 파악 노력의 부족과 조사원의 적극성 부족도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조사에서 자연스럽게 매개 또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외국인 고용주 및 외국인 거주지 관리인에 의한 누락도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조사 시, 조사원의 직접 면접보다는 외국인 고용주 또는 외국인 거주지 관리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조사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조사의 상황과 달리 법무부 출입국자료에 의한 체류외국

인 통계는 출입국 시 기록된 자료와 외국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집계해오고 있다. 이러한 집계과정은 편리성뿐만 아니라 전체적 규모 파악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통계조사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밀입국이 아닌 공식적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완벽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극소수의 밀입국자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다는 한계는 있으나 밀입국자에 대한 파악은 통계조사로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감안할 때, 체류외국인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인 것이다.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간의 괴리정도를 국적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표 3-8>의 내용과 같다.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는 법무부와 행안부의 통계가 있으나, 실질적인 기본정보는 법무부의 출입국 행정자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간의 수치를 비교하였다. 논의의 중심이 되는 체류외국인 수의 비교는 서로 개념이 상이하므로 올바른 비교를 위해서는 출입국통계를 수정하여야 했다. 출입국 통계에서는 장·단기를 막론하고 입국 이후 현재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을 체류외국인으로 규정하므로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자와 비등록 대상자 중 불법체류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인구주택총조사의 체류외국인의 개념과 일치시켜 비교한 결과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파악된 체류외국인은 전체 조사대상 외국인중 42% 정도만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적별로는 방글라데시의 조사비율이 20.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중국(57.6%), 미국(55.5%), 러시아(52.3%)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아, 조사비율 면에서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인구주택총조사와 출입국 행정자료간 체류외국인 규모 비교
출입국 통계 체류외국인 인 총 치 이

국 적	출입국 통계 체류외국인		인 총 치 이		비 율	
	(A)	등록자 비등록 불법체류	(B)	(A-B)	(B/A, %)	
계	563,555	485,144	78,411	237,517	32,038	42.1
중국	92,896	70,654	22,242	53,509	39,387	57.6
중국(조선족)	160,524	146,338	14,186	37,090	123,434	23.1
미국	24,531	23,476	1,055	13,606	10,925	55.5
필리핀	34,309	30,649	3,660	16,652	17,657	48.5
태국	27,707	21,398	6,309	10,294	17,413	37.2
베트남	36,780	35,514	1,266	16,814	19,966	45.7
방글라데시	14,588	9,054	5,534	3,037	11,551	20.8
몽골	20,016	13,695	6,321	7,578	12,438	37.9
우즈베키스탄	13,191	10,752	2,439	5,479	7,712	41.5
러시아	5,964	3,697	2,267	3,120	2,844	52.3
파키스탄	10,669	8,701	1,968	4,474	6,195	41.9
기타	122,380	111,216	11,164	65,864	56,516	53.8
주 인 총 외국인	기준	출입국통계 외국인	기준			

: (2005.11.1.), (2005.12.31.)

이러한 괴리문제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행정자료에서 다루고 있지 못한 교육정도, 직업, 주거환경 등 일부 특성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수조사로서 전체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서류형식으로 관리되어 과거 집계가 어려웠던 행정자료가 전산환경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거의 실시간으로 집계가 가능해지면서 주기적인 공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조사통계로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위상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다. 외국인 누락 문제는 인구주택총조사 전반의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조사개선을 논함에 있어 다른 어떠한 가치를 희생하고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나. 조사결과의 활용범위 축소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분리하여 전용조사표

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그 이전의 조사에서도 외국인은 별도의 필요항목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당연히 조사결과의 집계도 외국인은 제한된 분야에 한정되어 이루어지게 되며 공표단계에서는 자료의 수준 확보가 가능한 범위로 다시 축소되게 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결과표의 대부분은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별도로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기존 조사결과의 활용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항목별 활용도를 제공되고 있는 통계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본 결과는 <표 3-9>의 내용과 같다. 최종적인 결과표를 제공함으로써 활용도가 인정되는 항목은 '성', '연령' 등 5개 항목이었으며 가구·주택관련 항목을 비롯한 8개 항목이 참고적인 용도로만 이용되었거나 의미 있는 결과표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았다고 분류하였다.

<표 3-9> 외국인관련 조사항목별 활용내역(2005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도 구분	조사항목	활용 내역
		개 결과표로 집계하여 활용
활용도 높음	성별, 연령, 국적, 교육정도, 직업	5성 및 연령별 외국인 국적 성 및 연령별 외국인 성 및 국적별 외국인 국적 성 및 직업 대분류 별 외국인 국적 성 및 교육정도별 외국인
활용도 중간	이름, 주소	조사과정, 내검시 활용
	체류목적, 체류기간	장기체류외국인을 선별시 활용
활용도 낮음	점유형태, 사용 방 수, 주거시설형태, 거처의 종류 및 건 물 층수	결과표에서 부가적인 특성수준이 일반 가구와 맞지 않아 통합집계 곤란 외국인만의 별도 결과표 산출은 가능
자료		()

: www.kosis.kr(2009.5.)

이와 같이 외국인관련 항목의 활용이 제한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는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개선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판단의 이유를 사례를 들어 세부적으로 지적해보면 아래의 내용과 같다.

- 1) 외국인소유 또는 전용거주의 누락: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2000년 이전의 조사에서는 이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이 조사되지 않아 주택의 총수가 포함되는 결과표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었다. 내국인이 주인 또는 대표가구로 있는 거처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해당이 없지만 외국인만 살고 있는 거처는 총 주택 수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하나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2000년 조사부터는 외국인전용 조사표에서도 '주인·동거가구 여부' 항목을 조사하였지만 주택의 총수만을 산정하는 목적 이외에 별도의 특성이 부가된 결과표에서는 여전히 활용이 불가능하였다.

- 2) 한국인과 거주하는 외국인의 조사 문제: 2000년까지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외국인전용 조사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강제적으로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로 조사하여 왔다. 조사의 편의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채택해온 이러한 조사방법은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불만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가구 수 산정 시 실제와 괴리된 허수 발생 문제, 가구내 구성을 특성으로 하는 집계계의 왜곡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조사에서는 내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용 일반조사표에 같이 조사하도록 수정하고 외국인 가구원에 대해서는 '국적'만을 추가 조사하는 형태로 보완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의 개선도 외국인전용 조사표로 조사된 외국인들과 조사항목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었다. 특히, 전수지역의 한국인 가구에 포함된 외국인은 '직업'항목이 조사되지 않아 '직업'항목을 두고 있는 외국인전용 조사표로 조사된 외국인과 자료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조사과정상의 편의성을 위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별도의 항목으로 조사하는 체계에서는 어떠한 수정과 보완하더라도 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신규 통계수요 대응 부족

체류외국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문제, 각종 외국인 관련 복지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대안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 작성기관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특히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전국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고 있는 정책적 기초자료로서의 통계조사인 경우는 더욱 그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할 것이다. 현재, 외국인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다문화 가정의 현황, 귀화자 현황 등 인구주택총조사가 다루고 있지 않은 외국인관련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고, 개별 연구자들도 경제·사회적인 측면의 다양한 연구에 통계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다양한 외국인 통계의 보급을 바라는 신규 수요에 의해 현재와 같은 일반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집계시스템은 곧바로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내용의 재검토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내용의 재검토는 비단 외국인 대상 조사 항목 수의 확대와 같은 양적 측면만이 아니라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질적인 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좋은 사례로서 외국인 가구의 자녀에 관한 조사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행안부에서는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주민 기초실태조사'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문제는 다문화가정의 정책수립에 있어 중요한 관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 가구의 답변에 따라 외국인 또는 내국인으로 구분하면서, 국제결혼과 귀화를 통해 구성된 가구 내 자녀는 내국인으로 취급하며 국제상사의 주재원 등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자녀는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방식은 전체적인 체류외국인의 산정에 있어서도 부정확함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든다. 외국인 사이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만 18세 이전의 아이에 대한 외국인 구분 문제의 법적, 통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

문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통계의 필요성이 높아져가는 상황은 제한된 특성만을 보여주는 한정된 통계의 제공이 결국 통계수요자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고 이는 다시 해당 통계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것이다.

제3절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 통계 개선

현재 인·총 외국인조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체류 외국인의 총규모를 사실에 근거하여 올바르게 산정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조사응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와 함께 기존 개별 면접방식에 의한 통계작성 시스템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행정자료의 활용이라는 대체수단을 동원하고자 하는 중·장기적인 대안을 고려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 면접방식에 의한 통계작성 시스템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한정된 조사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사표 및 항목의 체계에 관한 단기적인 개선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 통계작성체계 개선의 기본적 방향을 행정자료 활용을 통한 외국인 총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두고 행정자료에서 나올 수 없는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접조사 결과를 이용해 추정함으로써 보완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실시해오던 외국인조사는 소폭의 개선을 통해 그대로 실시하면서 총 외국인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자료는 외국인 등록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조사방식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외국인전용 조사표 사용에 따른 내·외국인간의 괴리문제와 조사응답률 개선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국인전용 조사표란 조사의 편리성을 고려해 외국인만을 위한 필수항목으로만 제한하여 구성한 조사표를 지칭하며, 본 조사표 체계에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조사항목을 달리 적용하므로 집계 시에 많은 결과표에서 외국인이 제외되는 문제를 드러내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결국 주요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항목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자 하며, 조사 응답률의 개선을 위해서는 외국인 소재파악을 위한 행정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행정자료의 활용: 중장기적 접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외국인관련 행정자료는 외국인 등록자료이다. 외국인 등록자료는 내국인에게 있어 주민등록자료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기록이다. 본 자료는 법무부 출입국 통계는 물론, 행안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 실태통계의 작성에 있어서도 기본자료로 이용되고 있어 현재 전국규모의 외국인 파악을 위한 행정자료로서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등록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상 거주하게 되는 장기 거주자로서 외국인의 자발적인 등록 요청으로 지자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자발적인 등록자로 한정되어 있어 개념상 불법체류 부문까지를 포괄하여야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비교대상 자료로서 부적합해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출입국시 기록된 모든 외국인 자료도 포함하고 있어 불법체류자의 규모 파악에도 유용한 자료이다.

외국인등록 자료를 통해 불법체류 부문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은 행정자료의 활용에 따른 크고 작은 문제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의 면접조사에 있어 가장 큰 난제로 남아있던 불법체류자의 조사기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등록자료 활용의 기본 방향은 체류외국인 규모 통계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자료로서 이용하도록 하며, 항목별로 외국인등록 자료에 의해 인구주택총조사 외국인부문의 항목이 얼마나 대체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항목별 대체가능성은 전수항목을 중심으로 인구와 가구·주택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인구관련 사항

인.총 외국인조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인구관련 전수항목은 2005년 조사 기준으로 총 8개 항목이다. 외국인 등록자료의 활용을 통해 8개 항목 전체를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항목에 따라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서 처리하여 집계해야 한다. <표 3-10>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외국인 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 등록자료가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대체 가능’, ‘제한적 대체 가능’, ‘대체 어려움’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표 3-10〉 조사항목별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 평가(인구 항목)

구분	인.총 조사항목	외국인 등록자료	대체 가능성
인구항목	2005 이름	이름	○
	성별	성별	○
	연령	연령	○
	교육정도	-	×
	국적	국적	○
	체류목적	체류활동 범위	△
	체류기간	체류기간	△
	직업	-	×

주 ○ 완전대체 가능 △ 제한적 대체 가능 × 대체 어려움

○ : , △ : , × :

여기서 ‘완전대체 가능’이라 함은 별도의 수정 없이 외국인 등록자료로 그대로 대체가 가능한 항목을 말하는데, ‘이름’, ‘성별’, ‘나이’ 등 기본적인 인구변수들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변수들은 체류외국인의 총규모를 실질적으로 산정하는 데 동원되는 기본적인 변수들로서 외국인 등록자료 활용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접적인 완전대체가 불가능한 ‘제한적 대체 가능’으로 분류된 항목과 ‘대체 어려움’으로 분류된 항목들로서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1) 제한적인 대체 가능 항목: 제한적으로 대체가 가능한 항목 중 ‘체류기간’의 경우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거주기간과 거주예정기간

을 동시에 조사하여 이미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까지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반해, 외국인 등록자료에는 체류예정기간이 표시될 수 없어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분하였다. 즉, 개별 면접조사에서는 개인별 체류의지까지도 조사할 수 있어 예정기간을 포함한 개념의 체류자 포착이 가능하였으나 등록자료에서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간만을 기준으로 장기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향후 체류 희망에 근거하여 장기 체류자로서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발생한 사실에만 기초하여 장기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보다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주요국 센서스의 외국인 조사에서도 체류예정기간을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자료가 비록 현재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형태와 똑같이 체류 예정기간의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지만 조사기준시점까지의 체류기간만으로도 대체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한적인 대체로 분류된 두 번째 항목으로서 '주된 체류목적'의 경우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8가지로²⁾ 조사된 바 있는데, 외국인 등록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로 동일하게 편제되어 있는 않아 완전한 대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분류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입국허가시 발급되는 Visa(입국사증)의 종류 즉, 출입국관리법상 활동범위별 분류가 세분되어 있어 8가지로 크게 분류된 기존 조사의 체류목적별 분류로 재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3-11>은 외국인 등록자료상의 활동범위별 분류를 인구주택총조사의 8가지의 체류목적별 분류와 비교한 것으로서 '외교'와 '공무'를 제외한 전분야가 인구주택총조사의 체류목적별 분류로 재편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2) ① 영주, ② 취업, ③ 종교활동, ④ 교육·훈련, ⑤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⑥ 친지방문, ⑦ 가족동반, ⑧ 기타

〈표 3-11〉 외국인 등록자료와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체류목적 분류 비교
출입국관리법상 활동범위 분류 인구주택총조사의 체류목적 분류

외 교	조사대상의
1.공 무 (A - 1)	조사대상의
2.협 정 (A - 2)	기 타
3.사증면제 (A - 3)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4.관광통과 (B - 1)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5.일시취재 (B - 2)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6.단기상용 (C - 1)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7.단기종합 (C - 2)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8.단기취업 (C - 3)	취 업
9. 문화예술 (C - 4)	교육·훈련
10.유 학 (D - 1)	교육·훈련
11.산업연수 (D - 2)	교육·훈련
12.일반연수 (D - 3)	교육·훈련
13.취 재 (D - 4)	기 타
14.종 교 (D - 5)	종 교 활 동
15.주 재 (D - 6)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16.기업투자 (D - 7)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17.역경영 (D - 8)	관광·사업차 일시방문
18.교 수 (D - 9)	취 업
19.회화지도 (E - 1)	취 업
20.연 구 (E - 2)	취 업
21.기술지도 (E - 3)	취 업
22.전문직업 (E - 4)	취 업
23.예술행행 (E - 5)	취 업
24.특정활동 (E - 6)	기 타
25.1.연수취업 (E - 7)	취 업
25.2.비전문취업 (E - 8)	취 업
25.3.전문취업 (E - 9)	취 업
25.4.방문동거 (E-10)	가족동반
26.거 주 (F - 1)	영 주
27.동 반 (F - 2)	가족동반
28.1.채외동포 (F - 3)	기 타
28.2.영 주 (F - 4)	영 주
28.3.기 타 (F - 5)	기 타
29.관광취업 (G - 1)	취 업
30.방문취업 (H - 1)	취 업
주 출입국관리법상 활동범위 분류	외교 공무의 경우 외교관 국제기구 등의 직원과 가족은 제외
31.조사에서 제외 (H - 2)	

: 1. , 2. ,

단,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당초 입국 시 관광, 훈련 등 단기 적 방문으로 허가를 받고서 이후에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등록자료 상의 분류를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의 주된 목적이 취업에 있으므로 이들의 체류목적은 최초에 허가된 활동범위에서 '취업'으로 변경하여 집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에서는 이들을 단기 불법체류자로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 이러한 예외적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까지는 '거주기간'항목과 함께 장기 거주 외국인을 선별하기 위한 참고지표로서만 한정되어 있던 '주된 체류목적'항목의 활용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기대될 수 있다. 이는 등록자료 상으로 장·단기의 구분이 명확해짐에 따라 부가적인 장·단기 구분의 단계를 생략할 수 있고 제고된 정확성으로 항목 고유의 목적인 외국인의 체류목적별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2) 대체가 어려운 항목: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분류한 '교육정도'와 '직업'항목의 경우는 등록자료에서 나올 수 없는 자료로서 부득이 조사결과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센서스를 등록자료 기준으로 전환한다고 할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게 된다. 즉, 표본조사로서 얻어진 정보로서 성별, 연령, 국적 등 기존에 확보된 변수를 이용해 통계적인 추정을 통해 결과를 집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추정을 위한 일정규모 이상의 '관측치(observation)'의 확보가 가능한가의 여부인데, '교육정도'의 경우는 전수항목이므로 일정규모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직업'의 경우는 표본항목으로서 상황이 다르다. 현재 조사체계 상으로는 전체 조사구 중에서 10%만을 표본조사표(long form)로 조사하기 때문에 등록자료에서 나올 수 없는 '직업'항목의 추정을 위해 지역별로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할 수 없을 개연성이 높다. 향후 전면적인 등록센서스를 가정할 경우, 외국인조사를 모두 현재의 표본조사 항목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지만 현재 조사체계에서는 표본조사구에 속한 외국인의 조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표본조사구내의 외국인조사에서 '직업' 항목의 누락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표본지역의 조사는 소규모의 조사로서 승수적용을 통해 전수를 추정하게 되므로 조사내용 모두가 중요하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표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욱 낮기 때문에 더욱 귀중한 자료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추정의 방법은 승수 적용을 통한 추정과 '교육정도'와 '직업' 등의 항목을 무응답 자료로 간주하여 '항목무응답처리(item imputation)'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부분은 '통계적 추정'부분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다.

나. 가구 및 주택관련 사항

가구 및 주택관련 사항에 있어서 외국인 등록자료의 효용성은 인구관련 사항에서 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등록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가구 및 주택관련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가구와 주택관련 항목의 경우는 통계조사 결과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주소 매칭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주택정보의 활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외국인 등록자료의 '주소'의 정확도가 신뢰할만한 수준일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가구 및 주택관련 부문에서는 행정자료의 활용이 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통계조사 자체의 개선을 통한 대안의 마련이 더욱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조사항목으로 확대 조사된 결과를 행정자료상의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는 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는 제한적이거나 활용이 가능한 '주소'와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표 3-12〉 조사항목별 행정자료 대체 가능성 평가(가구 및 주택 항목)

구분	인구조사항목	외국인 등록자료	대체 가능성
가구항목	2005년 거주형태	-	×
	사용 방 수	-	×
	주거시설형태	-	×
	-	가구주와의 관계	△
주택항목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	-	×
	주소	주소	△
	주 △ 제한적 대체 가능 대체 어려움		

- 1) 제한적인 대체 가능 항목: 주소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조사되고 있던 표지항목으로서 외국인의 지역별 집계에서 기본이 되는 항목이다. 외국인 등록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외국인의 대략적 소재 파악을 위해 참고자료로 이용한 바 있었다. 외국인 조사에서 대상 외국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등록된 주소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 등록 주소의 부정확성은 외국인 등록자료를 통한 체류외국인 산출에 있어서 지역별 집계에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주소의 정확도가 더욱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현실과의 괴리정도를 정확히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규모 조사에서 대대적인 적용과 정확한 검토를 통해 주소를 비롯한 외국인 등록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하여야 하며, 이러한 검증과정에서 정확도가 입증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등록자료 상의 주소를 인정해도 되는 집단의 자료는 등록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며 그 이외 집단의 경우는 그 규모에 따라 재확인 또는 통계적 추정 등 적합한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한적인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두 번째 항목인 '가구주와의 관계'의 경우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외국인 가구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던 항목으로서 내국인 가구와의 통합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이 항목은 조사결과 집계 시에 세대 구성과 가구주

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결과표 작성의 기본이 되나, 현재까지는 외국인 조사가 외국인 규모 파악을 중심으로 조사 실시되어온 관계로 외국인가구의 가구구성 특성에 따른 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000년 조사에서는 한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외국인 전용조사표로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분리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2005년에는 한국인과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당 가구에서 같이 조사하도록 하였으나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외국인가구의 조사에 있어서는 여전히 가구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등록자료를 이용한다면 비록 전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외국인 등록 시 자발적으로 신고한 자료를 통해 제한적이거나 외국인 가구의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미신고 외국인에 있어서는 1인가구로 집계할 수밖에 없다. 결과표 작성 시, 가구구성용 기준으로 하는 결과표에서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별개로 취급하여 제표하여야 하는 기존의 한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행정자료를 통해 외국인 가구구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진전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 2) 대체가 어려운 항목: '점유형태', '사용 방 수' 및 '거처의 종류' 등과 같은 항목의 경우는 등록자료에서 나올 수 없어 통계조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기본적인 주거 수준과 생활환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환경적 특성들로서 거주 안정성 및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행안부의 경우도 외국인 주민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한계를 느끼고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 및 주거관련 항목에 대해서도 필수적인 항목만을 조사해 왔으나 향후 요구되는 선택적 복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항목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계결과의 작성은 조사를 통한 정보를 기준으로 승수

적용 또는 무응답처리 기법을 통해 통계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 통계적 추정

등록센서스를 염두에 두고 행정자료를 활용한 외국인 통계작성을 고려할 경우, 행정자료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항목 이외에 별도의 필요한 정보들에 관해서는 통계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통계조사는 예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체 외국인에 관한 완전한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전체 외국인에 대한 통계적인 추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외국인 등록자료 상의 외국인 규모를 목표집단(target population)으로 상정하고 외국인 대상의 표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함에 있어 현실적인 등록자료의 제약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인 추정방법을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를 통한 승수적용 방안과 통계적 무응답처리(imputation) 방안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먼저, 추정방법의 검토에 선행되어야 할 현실적인 등록자료의 제약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등록자료 상의 지역 정보인 '주소'의 정확도 문제이다. 외국인 등록자료의 '주소'에 대한 부정확성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한 사례를 통해 경험적으로 알려진 바 있다. 만일 '주소'의 정확도가 심각하게 낮을 경우에는 표본추출에서 지역적인 고려는 물론 조사대상 외국인을 선별하여 방문조사하는 것조차 어렵게 하는 제한요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주소'의 부정확성은 조사결과의 집계단계에서 지역별 결과표 제공의 한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집계수준인 시·도별 집계도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등록자료의 '주소'에 대한 정확성이 확실한 실사를 통해 검증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를 통해 행정자료 상의 '주소'에 대한 정확도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검증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정확도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도가 취약한 일부의 보완을 통해 시·도뿐만 아니라 읍·면·동별 결과까지도 생산이 가능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통계조사의 표본틀(sampling frame)로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주소'의 정확도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일 경우에는 지역정보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외국인에 한해서는 부득이 전국단위로만 집계 가능할 것이다. <표 3-13>은 외국인 등록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외국인 간의 시·도별 분포를 비교한 참고자료로서 두 자료간에 전체 외국인 규모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각각의 지역별 외국인 분포는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간 구성비의 차이가 서울지역의 2.5%p를 제외하면 모든 지역이 1.0%p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현장을 방문하면서 발견되는 외국인을 조사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지역별 외국인 분포가 등록자료와 일정한 비율의 차를 유지하면서 유사한 구성을 보였다는 것으로서, 적어도 시·도 단위에서는 등록자료의 '주소'에 대한 정확도를 일정 수준 신뢰할 수도 있다는 유추적인 해석이 가능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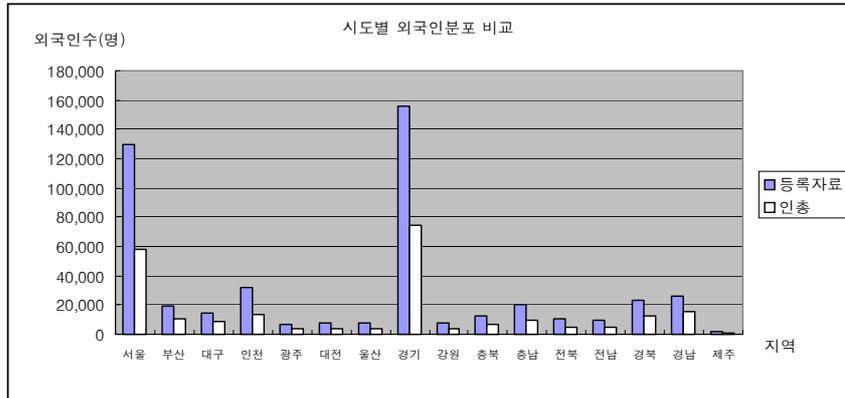
<표 3-13> 시도별 외국인 분포 비교(2005년)

단위 명

(차이, %, %p)

지 역	출입국 통계 외국인		인 총 외국인		차 이	
	등록자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 %p
전국	485,144 (A)	100.0 (B)	237,517 (C)	100.0 (D)	247,627 (C-D)	(0.0) %p
서울	129,659	26.7	57,625	24.3	72,034	2.5
부산	19,491	4.0	11,035	4.6	8,456	-0.6
대구	14,530	3.0	8,531	3.6	5,999	-0.6
인천	31,692	6.5	13,600	5.7	18,092	0.8
광주	6,357	1.3	4,072	1.7	2,285	-0.4
대전	7,895	1.6	4,305	1.8	3,590	-0.2
울산	7,503	1.5	4,243	1.8	3,260	-0.2
경기	155,613	32.1	74,393	31.3	81,220	0.8
강원	8,060	1.7	3,789	1.6	4,271	0.1
충북	12,874	2.7	6,581	2.8	6,293	-0.1
충남	19,858	4.1	10,078	4.2	9,780	-0.1
전북	10,175	2.1	5,134	2.2	5,041	-0.1
전남	9,257	1.9	4,645	2.0	4,612	0.0
경북	23,419	4.8	12,922	5.4	10,497	-0.6
경남	26,585	5.5	15,363	6.5	11,222	-1.0
제주	2,176	0.4	1,201	0.5	975	-0.1
주 출입국 통계 외국인		기준	인 총 외국인	기준		

: (2005.12.31.), (2005.11.1.)



[그림 3-3] 시도별 외국인 분포 비교(2005년 기준)

만일, 인구주택총조사 실시과정에서 실증적으로 '주소'의 정확도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될 경우에는 추정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사후적인 총화와 추정은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사후총화를 통한 추정은 표본조사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외국인 '주소'에 대한 등록자료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검토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자료의 '주소'가 부정확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표본으로 선정된 외국인을 찾아서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외국인의 대략적 특성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할당된 단순확률 표본만을 조사하여 사후적인 총화를 통해 결과를 추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통계적 무응답 처리의 경우는 등록자료 상의 외국인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통계조사의 결과가 적어도 50%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성별, 나이, 국적 등 기본적인 변수를 등록자료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무응답처리는 항목무응답처리(item imputation)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인 절차는 등록자료에 나오지 않는 변수들을 무응답된 자료로 가정하고 통계조사 결과를 기여 집단(pool)으로 하여 등록자료를 추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무응답처리의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응답비율의 문제와 지역변수의 확보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응답비율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50% 이상의 응답자료만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나, 통계적으로 안정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응답된 자료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기법의 적용은 등록센서스 체제하에서 소규모 표본조사로 진행될 외국인조사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대규모로 실시된 조사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지역변수 확보 문제의 경우도 무응답 처리기법이 주로 지역적 근접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응답처리에 있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통계조사 결과의 지역변수는 조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등록자료는 그 정확도의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에나 자료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통계적 추정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의 정립은 외국인등록자료의 정확도 특히 '주소'의 정확성을 중심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등록센서스에서의 외국인 표본조사의 추정 문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등록자료의 '주소'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를 거친 이후에나 그 신뢰성 여부에 따라 일반적인 표본 추정 또는 사후 추정으로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무응답처리기법의 경우는 등록자료의 '주소'에 대한 정확성 검증뿐만 아니라, 전수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이 대규모 조사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향후 등록센서스로의 전환을 전제로 할 때 추정의 기본적인 방향은 2010년에 실시될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행정자료의 정확도 분석과 검토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2. 기존 조사방법의 개선: 단기적 접근

여기에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조사방식에 대한 객관적 재검토를 통해 단기적으로 채용 가능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응답률 개선을 위한 대안뿐만 아니라 결과 집계 효율성도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조사표 및 조사항목의 재검토를 통해서 개선의 여지를 도출하였으며, 2010년에 실시하게 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바로 도입이 가능한 현실적인 조사응답률 제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가. 조사표 및 조사항목의 개선

현행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체계는 내국인용과 외국인용으로 구분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전용조사표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내국인이 가구주로 있는 가구의 경우에만 해당 외국인 가구원을 내국인용 조사표에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내국인용 조사표로 조사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한 조사내용과 더불어 국적만을 추가하여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체계에서는 동일한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용 조사표에서 조사된 외국인은 외국인용 조사표로 조사된 외국인과 달리 '주된 체류목적'과 '거주기간'의 두 개의 항목이 누락되게 된다. 또한, 전수조사구에서 조사된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인용 조사표에서 나오는 '직업'항목도 누락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부득이 결과 집계 시에 일부를 '미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표 3-14>에서 직업이 '미상'으로 분류된 대부분 원인은 외국인을 내국인용 조사표로 조사하면서 '직업'항목을 누락 조사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결과 집계 단계에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비논리적인 조사방식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3-14> 국적/성/직업(대분류)별 외국인(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명
 직업 대분류 (:)

국적	외국인	의회의원 교위임직원 및 관리자	(일하지 않음)		미상
			~	~	
합계					
중국	237,517	1,671		38,381	40,612
중국 조선족	53,509	151		11,545	16,433
중국(대만)	37,090	43		6,742	4,012
미국	10,221	40		2,728	2,699
기타	13,606	294		4,028	1,885
미상	28,521	606		4,965	2,071
자료	3,649	14		294	1,564

: www.kosis.kr(2009.3.)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수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내·외국인을 포괄하여야 하는 완전성 측면의 개선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주택관련 항목의 경우, 외국인용 조사표의 조사항목은 내국인용 조사표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조사항목 수에 대한 직관적인 단순비교만으로도 조사내용의 과소에 따른 외국인 조사결과의 활용 제한이 문제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국의 총계를 집계하여야 할 항목에 대해서도 외국인부문의 조사항목 생략으로 인해 전체 수치의 누락이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서 2000년 조사 시, '거처의 종류'는 조사하고 '주(대표)가구 여부'를 조사하지 않아 전국의 주택 총계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대표가구로 거주하는 주택이 누락되기 때문에 2005년 조사에서는 '주(대표)가구 여부'항목을 추가한 바도 있다. 여기서 주(대표)가구 여부를 조사하지 않으면 전체 수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는 하나 전체적인 집계의 완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2005년 조사에서 '거주층', '난방시설', '충방수', '건축년도', '편익시설 수' 등 대부분의 전수항목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완전한 집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15〉 내·외국인용 조사표간 가구·주택 항목 비교(2005. 인구주택총조사)

구분		내국인용 조사표 항목	외국인용 조사표 항목	
항목 총계		개	개	
가 구 부 문	전수	가구구분	17	5
		사용 방수		사용 방수
		주거시설 형태		주거시설 형태
		거주층		
		난방시설		
		점유형태		점유형태
		주안가구 및 주택소유 여부		주인 대표 가구 동거가구 구분
	표본	거주기간		() /
		자동차 보유 대수		
		주차 시설		
가구항목 수	임차료			
		개	개	
		11	4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 수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 수
주 택 부 문	전수 표본 공통	연건평	-
		대지면적	-
		총 방 수	-
		건축년도	-
		편의시설 수	-
주택항목 수		개 6	개 1

현행 조사표 및 조사항목의 개선을 결과표 집계와 완전성 확보와 비논리적인 집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면 외국인 조사항목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내국인용 조사표와 통합이라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통합이라는 의미는 조사표와 조사항목의 통합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조사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사항목을 포함한 조사표까지를 동일하게 작성하는 물리적인 통합이라는 방법과 조사표는 달리 적용하더라도 조사항목을 동일한 수준으로 채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조사항목의 통합정도에 따라서 전수항목만의 통합과 표본항목까지의 통합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규모 통계의 개선을 위한 외국인 조사를 제고를 최상위의 목표로 설정할 경우에는 기존의 외국인전용 조사표의 조사항목을 현재보다 축소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조사항목을 비롯한 일부 조사항목들의 경우는 공표를 하지 않고 있어 활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항목을 과감히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축소대상으로 볼 수 있는 항목으로는 활용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가구, 주택관련 항목과 '체류목적'과 같은 인구관련 항목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조사표의 단순화를 통한 외국인 응답률을 높이하고자 하는 기존 조사방식의 흐름을 심화해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수요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보다는 현실적인 통계의 정확성 확보라는 측면을 더욱 중요시할 경우에 한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의 방향은 향후 예상되는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통

계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정보의 양적인 측면에서 행정통계와의 차별성이 결여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어 현실적으로 채택하기에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1) 조사표 운용

외국인 조사표 설계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기존의 방식인 내국인 대상 조사항목 중에서 외국인전용 항목을 선별해내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처음부터 내·외국인을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할 것으로 상정하고 이후 세부적인 조사표 설계단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조사가 불필요한 항목에 한하여 외국인은 제외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통합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내·외국인을 동일하게 조사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조사표를 통합하게 되면 조사구설정 과정에 있어서도 보다 효율적인 업무단순화가 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조사구 설정방식에서 특성번호 5번인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단, 이러한 조사표 통합에는 전수조사지역뿐만 아니라 표본조사지역에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조사표로 조사를 진행해야하는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별도의 외국인 조사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해당 외국인이 전수조사지역에 거주할 때는 전수조사표로, 표본조사지역인 경우에는 표본조사표로 조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조사되는 항목의 수준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되므로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수준의 정보 획득이 가능하여 내·외국인 통합 집계가 원활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표본설계 시 외국인을 감안할 경우에는 표본조사구에서 조사된 외국인의 정보를 통해 어느 통계에서도 나올 수 없는 구체적인 외국인 통계 산출도 가능할 수 있다.

반면에 조사 수행의 어려움은 기존 외국인전용 조사방식에서보다 훨씬 가중되므로 외국인 조사응답률은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표본조사 지역의 경우 40~5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항목을 외국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전수지역에서보다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사결과와 집계 및 활용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은 현실적으로 외국인 조사응답률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서 채택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이러한 내·외국인 조사표의 완전 통합방식의 문제점과 집계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 대안으로서 외국인 조사를 내국인용 전수조사표에 한정하여 통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내국인용 전수조사표와 같은 항목으로 조사하여 결과 집계시 전수결과와 동일한 수준의 결과표 생산이 가능하며 표본조사 수준의 조사를 배제함으로써 조사의 어려움도 경감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표 운용측면에서도 굳이 외국인과 내국인용을 물리적으로 통합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전수항목을 기준으로 조사항목을 채택하면 되므로 기존과 같이 다국어로 작성된 외국인용 조사표 방식을 운용할 수도 있다. <표 3-16>은 지금까지 개선방안의 검토에서 기술한 각 주요 사안별로 조사표 운용방식에 따른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표 3-16> 조사표 운용방식에 따른 비교

검 토 사 항	전수 표본 통합	전수 통합	기존방식
조사 편의성	하	중	상
다국어 조사표 운용 가능성	불가능	가능	가능
집계 논리성 확보	상	중	하
집계 완전성 확보	상	중	하
정보제공 확장성	상	중	하
별도 외국인조사구 필요성	불필요	필요	필요
외국인 표본 설계 필요성	필요	불필요	불필요

여기서 내·외국인간 조사내용의 완전 통합은 결과 집계단계에서의 우수성과 외국인관련 통계 제공의 확장성이 우수하여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조사운용의 어려움과 다국어로 제작된 조사표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조사 편의성 및 응답률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인에게 조사된 표본항목의 활용을 위해서는 별도로 외국인을

감안한 표본설계가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현실적인 운용 면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결국, 현실적인 조사표 운용의 편의성 도모를 통한 응답률 제고와 결과 활용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수항목만을 중심으로 하는 내·외국인 통합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별도 전용조사표의 활용 여부는 내국인용 일반조사표에서도 외국인 고유항목이 추가될 경우, 별도 전용조사표와 통합조사표의 선택에 따른 상대적인 실익이 없어 보이나, 별도의 전용조사표 방식이 다국어로 제작된 조사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하겠다.

2) 조사항목

외국인관련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편의상 적정 조사항목 규모와 조사항목의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사항목 규모에 관한 논의는 외국인에 대해 몇 개의 항목을 조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서 실질적으로는 내·외국인 간의 조사내용 통합 문제와 직결된다. 조사내용의 통합을 전제할 경우에는 내국인용 일반조사표에서 결정되는 항목에 따라 외국인관련 항목도 대부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표를 전수와 표본항목 모두를 포괄하는 내·외국인 통합방식의 경우에 외국인 조사항목의 규모가 가장 커지게 될 것이며, 기존 방식과 같은 조사표 체계 하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로 결정되게 될 것이다. 조사표방식에 대한 검토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언급한 바 있는 전수항목 중심의 통합에 있어서는 내국인조사의 전수항목과 '국적', '체류기간' 등 소수의 외국인 고유항목이 합해진 규모로 정해지게 될 것이다.

조사항목의 내용적인 검토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표 3-17>과 같이 내·외국인 공통 항목과 외국인 전용 또는 내국인 전용 항목으로 분류할 경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항목을 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별도의 외국인전용 조사표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내국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전용 조사표와 동일한 수준의 항목을 적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국적'만을 추가하여 조사하였으나

‘입국목적’, ‘체류기간’, 및 ‘직업’ 등 외국인 고유항목으로 채택한 별도의 항목이 있다면 반드시 내국인용 전수조사표에서도 이러한 항목이 ‘국적’과 더불어 조사되어야 한다. 이는 전국의 외국인을 집계하여야 할 때 내국인용 일반조사표에서도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되어야 비로소 두 자료간의 결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국목적’, ‘체류기간’, 및 ‘직업’ 등 외국인 고유항목은 기존 외국인 고유항목으로 조사되어 오던 항목들로서 비단 전수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내·외국인간 통합방식 뿐만 아니라 표본항목까지도 고려하는 내·외국인 조사표의 완전 통합 방식에서도 조사표 문항설계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표 3-17〉 내·외국인용 조사표간 조사항목 비교(2005 인구주택총조사)

구분	내국인 전용	내·외국인 공용	외국인 전용	
표시	전수 표본	조사포함 여부 확인항목 농림어가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주소 및 조사구 거처 가구번호 가구원 수 성명 성별, 나이	주인 대표 가구 동거가구 구분 / 주된 체류목적
	전수 표본	종교 남북이산가족 혼인상태 아동보육 년전 거주 지 활동제한5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장소 이용교통 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산업 직업 근로장소 혼인년월 총 출생아 수 추가 계획 자녀 수 고령자 생활비 원천 가구구분 거주층	교육정도 , 국적	체류기간 직업 대분류 ()
가구 부문	전수 표본	난방시설 , , 거주기간 자동차 보유 대수 주차 시설	사용 방 수 주거시설 형태 점유형태 주인대 표 가구 동거가구 구분 () /	-
	전수 표본	연건평 대지면적 총 방 수 건축년도 편의시설 수 , ,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 수	-
주택 부문	전수 표본			

외국인 고유항목 중 '국적'의 경우는 조금만 조사범위를 확장한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는 조사시점의 '국적'만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를 내·외국인 모두에게 '원국적' 또는 '귀화 여부'를 추가적으로 조사한다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 현실에 기초한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함께 조사된 여러 항목을 부가하여 특성별로 분석할 경우, 어느 자료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다문화가정의 통계 제공이 가능해져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적으로 이러한 '국적'부분의 확대 조사는 외국인 규모통계의 정도 개선에도 일부 도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조사체계에서는 조선족, 중국인 등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경우, 내국인과 외모가 유사하여 조사원이 외국인 여부를 묻지도 않고 내국인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국적'과 함께 '원국적' 또는 '귀화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면 외국인 누락의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배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다.

나. 응답률 제고 방안

외국인조사의 개선에 있어 응답률 제고에 관한 논의는 가장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임과 동시에 통계조사의 본질상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응답률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국인 소재파악을 위한 행정자료의 발굴과 활용

앞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살펴본 외국인 등록자료는 '주소'를 비롯한 '성별', '나이' 등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주소'의 경우는 외국인의 개별 거주지에 관한 위치정보로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인 외국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한 바 있었다. 당초 외국인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조사과정에서 개별 조사원에 의해 평가된 등록자료의 '주소' 정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등록자료상의 사전 소재정보 확보를 통해 외국인 조사누락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의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확성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활용을 장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의 부정확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기타의 외국인관련 행정자료의 활용방안을 찾아보고, 더불어 등록센서스를 감안한 행정자료의 정확성 검증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주소'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등록자료의 정확성 보안을 위한 자료로서는 현실적으로 노동부의 고용허가관련 등록자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2008년 5월 현재, 약 150,000명 정도의 취업 외국인에 대한 정보가 '고용허가신청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DB화 되어 있으며, '주소'를 비롯한 정보의 정확도 측면에서도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등록자료에 비해 우수하다. 또한, 본 자료를 이용할 경우, '주소'를 비롯한 외국인 등록자료의 부정확성을 보완하게 되게 됨은 물론, 고용 허가된 외국인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부실 등록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2개 자료 모두에 포함되어 있는 '여권번호'를 이용한 2개 자료의 통합을 통해 자료를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할 것이다. 조사의 참고자료로서의 활용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원화된 외국인 등록자료를 조사원에게 배부하여 활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한편, 이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실시과정에서 반드시 외국인 등록명부의 정확도를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향후에 진행될 등록센서스를 대비해서 외국인 등록자료의 정확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조사 시 조사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배부된 외국인관련 등록자료의 정확도 체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입력 및 분석함으로써 전국적 규모의 행정자료 정확성 검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본조사 단계에서 정확성 검증의 기본항목은 '주소'가 될 것이며, 기타 '성별', '나이' 등의 변수들의 경우는 조사 완료된 조사표의 내용과 행정자료간의 비교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 강화

통계조사에 있어 조사 협조의 정도는 홍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 특히,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조사 협조도가 낮은 외국인 대상의 통계조사에서는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별도로 특화된 홍보활동은 미미했었다. 한정된 홍보 예산을 나누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외국인까지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법체류문제로 인한 외국인집단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외국인들이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혼동할 수 있는 통계담당기관과 단속기관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두고 별도의 홍보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홍보 방안으로는 조사의 취지와 체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 등의 내용을 주요 외국어로 작성한 홍보전단을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 및 외국인 조사구를 중심으로 부착하는 방안과 외국인 장터, 외국인 복지단체 등 외국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홍보 전단 배부를 통한 홍보방안도 외국인의 적극적 조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외국인 집중 거주지역에 관한 정보는 고용허가 등록자료에서 외국인 채용을 요청한 업체 소재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외국인 조사방법 검토

외국인 조사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불법체류자를 중심으로 한 조사 불응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각 나라별로 발달해 있는 외국인 커뮤니티를 조사에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구성된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례로서는 과천의 동남아중심의 단체, 이태원 회교사원을 중심으로 하는 회교권 국가 모임, 안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모임, 서울 혜화동의 필리핀 장터 등을 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화되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며 종교 및 자선단체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모임들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체류자격의 합법, 불법을 불문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커뮤니티 구성원을 조사

원으로 채용하여 조사를 실시한다면 불법체류자에 대해 보다 용이한 접근이 가능해지고 의사소통의 어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사방식의 실무적인 적용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센서스의 기본적 원칙인 중복과 누락의 방지와 관련된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모두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전반적인 외국인 조사체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외국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사방법은 일반조사지역에서 조사되는 외국인과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조사되는 외국인을 서로 중복 없이 조사하여 이후에 통합해야만 하는데, 여기서 이원화된 데이터의 통합에 필수적인 고유번호의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일반조사부문의 외국인과 커뮤니티내의 외국인을 각 부문별로 조사한 이후 외국인별 매칭을 통해 중복을 제거하고 합산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키(Key)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구별할 수 있는 매칭에 적합한 키로서 여권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여권번호의 조사가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으로 조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커뮤니티의 활용은 외국인 조사비용을 높이기 위해 부가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는 근본적인 취지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를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고유번호를 활용한 중복과 누락의 문제해결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는 조사원활용의 실효성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경우, 외부의 조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조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언어문제의 해결 측면이나 상호신뢰의 확보를 통한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일정 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는 조사구만을 담당하게 되는 일반 조사지역과 달리 커뮤니티를 활용한 조사에 있어서는 인접한 지역을 묶어 업무량을 배정하기 곤란하므로 부

득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각 구성원들을 조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조사원 모집부터 조사요령 교육, 업무량 책정, 조사원 배정문제 등 조사원 운용의 전 과정에 걸쳐 일반지역의 조사원과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해야하는 부담도 실무적인 검토 단계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감안해야 할 부분은 해당 외국인 커뮤니티의 자국출신자 명부 관리수준에 대한 질적 평가에 관한 점이다. 보통 외국인 커뮤니티는 종교단체, 사회봉사단체 또는 자체 협의회 등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과연 이러한 단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명부의 정확성이 행정자료와 비교하여 얼마나 우수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주소의 경우 조사의 기본사항이 되는 정보로서 행정자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거주지 정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수준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 부정확한 주소로 인해 조사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는다면 커뮤니티 활용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므로 실제 데이터 확인을 통한 실무적인 검토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외국인조사는 위와 같은 문제점 및 실무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등록센서스를 염두에 둔 경우에 기존의 외국인조사는 동일하게 실시하여 무응답처리를 위한 준거자료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는 고려해볼만한 조사방법이 될 수는 있다. 즉, 표본조사 설계 시 불법체류자 부문을 커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용가능하다는 것으로서 표본조사 시 등록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고려를 위해서 조사명부 작성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외국인조사에 있어서 해당 지역 또는 조사구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보조 조사원으로 채용하거나 외국인 기숙사의 경우는 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해당 관리인을 보조 조사원으로 동원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비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방식은 현실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채택할 수 없으나 조사대상 외국인 집단의 내부자를 조사원으로 동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원 운용방식의 실익은 결국 외국인 응답률 향상과 조사의 정확도 제고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실시해보지 않았던 방식이므로 시험조사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제4절 등록기반 센서스에서 외국인 조사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인 센서스를 고려함에 있어 현재까지의 논의는 주로 내국인부문에 치우쳐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비록 비중이 작다고는 하나, 완전한 등록기반 센서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국인부문에 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에 관한 등록센서스는 현실적으로 외국인 포괄정도 면에서 독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며, 행정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는 부가적 표본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절에서는 등록센서스를 도입함에 있어 외국인부문의 통계작성에서 감안되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먼저 외국인에 관한 별도의 표본조사의 경우는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행정자료의 항목다양성의 한계로 인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본조사가 필요한 항목은 외국인 등록자료가 기존 통계조사 항목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되게 될 것이다. '직업', '교육정도'와 같은 인구관련 항목과 '거처의 종류', '주거시설 형태' 등 주거관련 항목이 외국인 등록자료로 대체할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부득이 통계조사를 통해서만 획득 가능하다. 향후 내국인에 대해 통계조사를 완전하게 배제하는 등록기반 센서스를 계획하게 되더라도 외국인 부문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별도 표본조사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등록기반 센서스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관련 행정자료의 구축과 활용에 있어 '여권번호'의 중요성이다. 기존의 통계조사를 통한 외국인통계 작성체계에서는 '여권번호'가 중요하지 않았다. 통계조사에서는 순수하게 조사된 결과만을 이용하여 집계하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여권번호'를 조사할 필요는 없었다. 또한 외국인의 응답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조사 비협조를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하지만, 등록센서스에서는 현재 구축되어 있거나 향후 구축될 수도 있는 외국인관련 행정자료들 간의 원활한 접목을 통한 정보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국인의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번호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초기에는 가용한 행정자료가 외국인 등

록자료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작을 수 있으나, 향후 외국인 관련 행정자료로 이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여권번호'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록센서스 실시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사항은 시계열 유지 가능성에 관한 검토의 필요성이다. 내국인에 있어서도 등록센서스 체계와의 시계열적 연결성은 중요하지만 외국인 부문에서는 특히 조사 결과와 행정자료간의 외국인 규모의 차이가 심한 상태이므로 전체 규모에 관한 시계열 유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 국적, 체류목적 등 개별 특성 분포의 시계열적 안정성은 검토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비교자료는 2010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결과와 동일시점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시산·집계한 결과를 비교 및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5절 결 론

1966년부터 외국인을 조사해온 이래 수십 년간 외국인 항목을 별도로 조사해온 우리나라의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새롭게 조사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과감한 개선의지와 함께 시험조사나 예행조사를 통해 새롭게 시도하게 될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에 필요한 검증과 검토 작업의 기준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로 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단기적인 접근과 중·장기적인 접근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장기적인 개선의 기본방향은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외국인 규모통계의 비현실성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외국인조사의 응답률 개선과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조사체계의 개선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등록자료의 활용을 통한 체류외국인 규모통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등록자료가 포함하고 있지 못한 외국인의 다양한 특성에 관한 정보 파악을 위해 별도의 표본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는 내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등록센서스와 구분되는 외국인부문의 특성으로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외국인관련 행정자료의 한계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중심의 등록센서스 연구와 연결되는 체계를 외국인부문에서도 시도함으로써 현재까지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외국인 규모통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2010년 실시될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결과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사표체계와 조사항목의 개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기존의 외국인에 대한 통계조사에서 경험한 바 있는 저조한 응답률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의 외국인 등록자료와 노동부의 고용허가 관련 행정자료를 결합한 외국인 소재 파악관련 참고자료의 활용을 현실적인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조사표와 조사항목 체계의 개선에서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관련 통계자료의 효율적 제공을 목적으로 전수항목 중심의 내·외국인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본격적인 등록센서스의 도입을 앞두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통계조사로서 등록센서스에서 필요한 행정자료의 정확도에 대한 검증작업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조사를 개선하고자 함에 있어 기존 조사체계는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과 오랜 연구를 통해 완성된 것으로서 체계의 안정성만큼은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구상하는 체계가 기존의 체계와 비교하여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우수하다고도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 신·구 두 체계 상호간의 장·단점은 여러 국면에서 교차하면서 나타날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센서스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는 현재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행정자료 기반의 센서스시스템 도입이라는 중차대한 현안이 자리하고 있다. 변화되고 있는 인구센서스 체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외국인조사 체계에서도 이 같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개선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민경 (2000), 「인구센서스의 이해」 도서출판 글로벌
- 통계청 (2007),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변천 자료집」
- _____ (2006), 「행정자료를 이용한 센서스 수행방법 연구」
- _____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침서」
- _____ (2006), 「2005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 _____ (2006), 「2005 인구주택총조사 무응답 처리방법 연구 및 읍·면·동 통계작성 가능성 검토」
- _____ (2004),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집 II」
- 한국인구학회 (2003), 「1925-2000 인구대사전」 통계청 ()
- _____ (2006),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연구」
- _____ (2003), 2005 2010
- Nordholt, Eric Schulte et. al.(2007), “Record matching for Census purposes in the Netherlands”, Statistics Netherland
- Nordholt, Eric Schulte(2005), “The Dutch Virtual Census of 2001: A new approach by combining 「diferent sources」”, Statistics Netherland
- Robert M. Groves「et. al.(2004), Survey Methodology」, John Willy & Sons
- Statistics Canada, Survey Skills Development Course , Statistics Canada
- UN(2007),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http://unstats.un.org/unsd/demographic/sources/census/alternativecensusedesign.htm>)
- UN(2001),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 United Nations

<부록 1>

체류자격별 활동범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07.6.1. 기준)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
외교 (A - 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공무 (A - 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협 (A - 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사증면제 (B)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관광통과 (B - 1)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일시취재 (C - 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단기장용 (C - 2)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보수·검수·운용요령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단기종합 (C - 3)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단기취업 (C - 4)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문화예술 (D - 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자 포함]
유 (D - 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산업연수 (D - 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p>13. 일반연수 (D - 4)</p>	<p>유학 (D-2)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 (D-3)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p>
<p>14. 취 재 (D - 5)</p>	<p>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p>
<p>15. 종 교 (D - 6)</p>	<p>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와 대한민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p>
<p>16. 주 재 (D - 7)</p>	<p>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 [다만 기업투자 (D-8)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D-8)종사하려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개정 1</p>
<p>17. 기업투자 (D - 8)</p>	<p>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 2007.2.28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개정 [</p>
<p>18. 무역경영 (D - 9)</p>	<p>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공·사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와 기업투자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p>
<p>19. 교 수 (E - 1)</p>	<p>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개정 < 2002.4.18 ></p>

20. 회화지도 (E -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1. 연구 (E - 3)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교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E-1)
22. 기술지도 (E - 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23. 전문직업 (E - 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 , [교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E-1)
24. 예술행 (E - 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
25. 특정활동 (E - 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6. 연수취업 (E - 8)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필요한 연수기간동안 지정된 연수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려는 자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2004.7.14 규정에 의한 국내
27. 전문직취업 (E - 9)	취업요건을 갖춘 자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 신설 해운법 제 조제 호·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수산업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수산업법 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구 사업체에서 4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선원법 제 조제 호에 따른 부원 部員 에 해당하는 자
28. 선원취업 (E-10)	신설 r 개정 3 5 () < 2004.8.17> <2007.6.1>

<p>26. 방문동거 (F - 1)</p>	<p>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나 삭제 다 <2007.2.28>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가 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다로서 체류자격 기업투자 (거주 영주) 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교수 (F-2) 연구 (F-5) 특정활동 동 의 자격에 해당하는 첨단·정보기술 인력(E-3) 법무부장관(E-7)이 정하는 자의 가사보조인 라 외교 내지 협정 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등록을 마친(A-3) 동거인으로(A-3)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마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 2002.4.18, 2002.11.6, 2004.8.17, 2007.6.1> 가 국민 또는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및 그</p>
<p>27. 거 주 (F - 2)</p>	<p>의 미성년 자녀 (F-5) 나 국민과 혼인관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에서 출생한 자와 그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 난민인정을 받은 자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려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이상인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는 자 중 기업 투자 자격으로 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 마 영(F-8) 자격을 상실한 자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강제퇴거된 자는 제외한다 바 외교 부터 협정 (까지의 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A-1)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다만 교수 부터 전문직업 까지 또는 특정활동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최소 체류기간을 년으로 한다] (E-5) (E-7) 사 비전문취업 · 석원취업 또는 방문취업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년 이내에 법무부(E-9) (E-10) (H-2)</p>

	<p>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p> <p>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p> <p>(1)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 기술·기능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p> <p>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p> <p>(2)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p> <p>개정</p> <p>< 2007.6.1></p>
<p>동 반</p> <p>28.</p> <p>(F - 3)</p>	<p>문화예술 내지 특정활동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세대(1)의 자녀로서 배우자(6-7)가 없는 자</p> <p>[산업연수(2)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p>
<p>의 재외동포</p> <p>(F - 4)</p>	<p>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해당하는 자 단순노무행위 등 제 조제 항 각호에서 규정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개정</p> <p>< 99.11.27, 2003.11.20></p>
<p>의 영 주</p> <p>28 3.</p> <p>(F - 5)</p>	<p>법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국민을 인 고용한 자 5</p> <p>나 미화 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로서 기업투자 자격으로 50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을 인 고용한 자 3 (D-8)</p> <p>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 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F-5)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p> <p>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고 영주 자격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F-5)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p> <p>마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자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p>

	<p>사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⁶⁰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p> <p>아 대한민국 민법 에 의하여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예술행행 자격을 제외한 주재 내지 특정활동 자격이나 거주 (E-6) 자격으로 5년 이상 (D-7)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E-7) 있는 자 (F-2)</p> <p>5 국민 또는 영주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F-5)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p> <p>개정 < 2004.8.17, 2005.7.5></p>
<p>29. (G - 1)</p>	<p>가 타 외교 내지 영주 및 관광취업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1)</p>
<p>30. (H - 1)</p>	<p>대한민국과 관광취업 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협정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자는 제외]</p>
<p>31. (H - 2)</p>	<p>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만 세 이상인 자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p> <p>출생 당시에 대한(4)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 제(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직계비속</p> <p>(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촌 이내의 혈족 또는 촌(2)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8</p> <p>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국가(3)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4)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자 4</p> <p>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4)</p>

	<p>(5) 유학 (D-2) 자격으로 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p> <p>(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p> <p>(7) 내지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p> <p>나 활동범위</p> <p>·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 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p> <p>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업분야에서의 활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산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가능]</p>
<p>방문취업</p> <p>31. (H - 2)</p>	<p>작물 재배업</p> <p>1)축산업 (011)</p> <p>2)근해 어업(012)</p> <p>3)연안 어업 (05112)</p> <p>4)양식 어업 (05113)</p> <p>5)제조업 ~ (0521)</p> <p>6)건설업 (15 37)</p> <p>7)산동물 도매업(46)</p> <p>8)기타 산업용 농산물(208) 산동물 도매업</p> <p>9)가정용품 도매업 (51209)</p> <p>10)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5144)</p> <p>11)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51731)</p> <p>12)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5148)</p> <p>13)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525)</p> <p>14)무점포 소매업 (526)</p> <p>15)일반 음식점업 (528)</p> <p>16)기타 음식점업 (5521)</p> <p>17)육상 여객 운송업 (5522)</p> <p>18)냉장 및 냉동 창고업 (602)</p> <p>19) (63202)</p>

<p>31. 방문취업 (H - 2)</p>	<p>20)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633) 21)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 서비스업 (751) 22) 건축물 일반 청소업 (75922) 23) 산업설비 청소업 (75923) 24) 사회복지사업 (86) 25)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26) 자동차 종합 수리업 (92211) 27) 자동차 전문 수리업 (92212) 28) 이륜자동차 수리업 (9222) 29) 목장업 (93121) 30) 산업용 세척업 (93911) 31)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3993) 32) 가사 서비스업 (95)</p>
-----------------------------	---

<부록 2>

체류자격별 법적체류기간(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2007.6.1.기준)

체류자격 기호 ()	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 기호 ()	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의 교	재임기간	교 수	년
1.공 무 (A-1)	공무수행기간	19.화화지도 (E-1)	년
2.협 정 (A-2)	신분존속기간 또는	20.연 구 (E-2)	1
3.사증면제 (A-3)	협정상의 체류기간	21.기술지도 (E-3)	년
4.관광통과 (B-1)	협정상의 체류기간	22.전문직업 (E-4)	년
5.일시취재 (B-2)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23.예술홍행 (E-5)	년
6.단기상용 (C-1)	일 90	24.특정활동 (E-6)	년
7.단기종합 (C-2)		25.연수취업 (E-7)	년
8.단기취업 (C-3)		25.2.의 비전문취업 3.	년
9.문화예술 (C-4)		25.3.의(E-9)	년
10.유 학 (D-1)		선원취업 4.	년
11. (D-2)	영 제 조외 제 항	26.방문동거 (E-10)	년
12.산업연수 (D-3)	영 제 조외 제 항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영 제 조외 제 항 제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년 : 1	27.거 주 (F-1)	년
12.산업연수 (D-3)	영 제 조외 제 항에 해당하는 경우 년 : 1	27.동 반 (F-2)	3
12.시행일 (D-3)	별표 2 의 제 호	28.동 반 의 재외동포 (F-3)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일반연수 2010.10.1]	년 12	28.2.의 (F-4)	년
13.취 재 (D-4)	년	28.3.기 타 (F-5)	년
14.중 교 (D-5)	년	29.관광취업 (G-1)	협정상의 체류기간
15.주 재 (D-6)	년	30.방문취업 (H-1)	년
16.기업투자 (D-7)	년	31. (H-2)	3
17.무역경영 (D-8)	5		
18. (D-9)	2		